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용어(변명 → 의견진술) 변경〉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62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 · 서일준 · 강승규 · 박성훈 · 이현승 · 김 건
김승수 · 박성민 · 조정훈 · 나경원 · 서명옥 · 서천호
신성범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2. 24.

3. 회 부 일 : 2025. 2. 25.

※ 의안번호 : 836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격심사 대상의원 또는 징계 대상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의 명칭을 ‘변명’에서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 및 제160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2조(의결) ① (생략)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u>변명</u>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u>변명</u> 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42조(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견진술</u> ----- ----- <u>의견진술</u> -----.
제160조(<u>변명</u>)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u>변명</u>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u>변명</u>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u>변명</u> 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0조(<u>의견진술</u>) ----- ----- -- <u>의견진술</u> ----- - <u>의견진술</u> -----.

현행 「국회법」 제142조제2항은 자격심사 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0조는 징계 대상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

‘변명’은 자격심사 대상의원 또는 징계 대상의원이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행위²⁾로서,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는 발언인 신상발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음.³⁾

변명이라는 용어는 1948년 「국회법」 제정⁴⁾ 시부터 사용되어온 것이기는 하나,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⁵⁾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자격심사 대상의원 또는 징계 대상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변명’이라는 용어를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의견진술’⁶⁾로 변경함으로써, 자격심사 대

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2) 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2018, p.194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04

4) **제정 「국회법」 (1948. 10. 2. 제정·시행) 제84조**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케할 수 있다.

제85조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1조 의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고 스스로 변명하며 또는 다른 의원으로 대신 변명케 할 수 있다.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6) ‘진술’의 사전적 의미는 ①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②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황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을 보고하고 알리는 일 또는 그런 소송 행위, ③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증인·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상의원 또는 징계 대상의원이 부정적 인식이나 선입견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히 설명·해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한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와 관련한 자치법규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16개 지방의회에서 「국회법」상 ‘변명’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음.⁷⁾

반면, 일반직·특정직공무원 등의 징계와 관련한 법령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법」상 ‘변명’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진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음.⁸⁾

알리는 일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7)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16개 지방의회는 자격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동일하게 ‘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경기도의회의 경우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징계에 대해서는 ‘변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심문 및 변명)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발언과 변명)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8)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관징계법」 제14조(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관공무원규칙」 제99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대상의원 또는 징계 대상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변명’이라는 용어의 가치중립적 용어로의 변경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와 제헌국회부터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변명’이라는 용어의 역사성, 지방의회의원 및 일반직·특정직공무원의 유사 취지 발언에 대한 용어 사용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